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6. . . (제회)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26년 4월 28일 공포된 「관광기본법」 개정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가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됨에 따라 회의 구성, 운영 등 전반적 개편 내용을 담은 시행령(「국가관광전략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의1 및 제3조의 2, 제3조의 3, 제6조)

나.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등)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실시 예정

3) 행정규제: 협의 예정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법률안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립·조정”을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립”을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관광시책 등에 대한 추진실적 평가 및 이행점검에 관한 사항

제3조를 삭제하고, 제4조를 제3조로 하며,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회의의 소집) ① 전략회의는 연 2회, 반기에 1회씩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필요에 따라 그 개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간사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에 출석·발언하는 자에게 회의 개최의 일시와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중전의 제4조)의 제목 “(구성원)”을 “(구성)”으로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국무조정실장”을 “대통령비서실 관광 관련 수석비서관”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회의의 운영)”으로 하

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의장이 전략회의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전략회의의 구성원 중에서 의장이 미리 지정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를 삭제하고,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8조까지로 한다.

제10조를 제12조로 한다.

제6조(종전의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간사) 전략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된다.

제7조(종전의 제8조) 본문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간사”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9조)의 제목 “(차관조정회의)”를 “(실무조정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차관조정회의”를 “실무조정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차관조정회의”를 “실무조정회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차관조정회의의 의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을 “실무조정회의의 의장은 대통령비서실 관광 관련 수석비서관”으로 한다.

1. 전략회의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검토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2. 전략회의에서 실무조정회의에 위임한 사항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자문회의) ① 국가관광전략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관광전략회의에 자문회의를 둔다.

② 자문회의는 의장 포함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회의의 위원은 관광정책 및 관광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전략회의의 간사가 위촉한다.

④ 자문회의의 의장은 자문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자문회의의 자문 사항을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1. 방한관광
2. 지역관광
3. 관광기반
4. 관광산업
5. 그 밖에 국가관광전략과 관련한 분야

제10조(중앙지방관광협력회의) ① 국가관광전략의 수립·이행에 관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및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전략회의에 중앙지방관광협력회의를 둔다.

② 중앙지방관광협력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전략회의에서 중앙지방관광협력회의에 위임한 사항
2. 전략회의에 상정할 안건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건의 사항
3. 전략회의에 보고할 지역관광시책의 이행상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력이 필요한 사항

③ 중앙지방관광협력회의의 의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되고, 구성원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1명을 말한다)가 된다.

④ 중앙지방관광협력회의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중앙지방관광협력회의의 의장이 지명한다.

제11조(중전의 제10조) 중 “전략회의의 운영”을 “전략회의, 실무조정회의, 중앙지방관광협력회의 및 자문회의의 운영”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능) 「관광기본법」 제16조 조에 따른 국가관광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관광진흥의 방향 및 주요 시책의 <u>수립·조정</u> 2. 「관광기본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의 <u>수립</u> <u><신 설></u> 3.·4. (생 략) <u>제3조(의장) ① 전략회의의 의장</u> <u>(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국무총리가 된다.</u> <u>② 의장은 전략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u> <u>③ 의장이 전략회의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전략회의의 구성원 중에서 의장이 미리 지정</u>	제2조(기능) ----- ----- ----- ----- --. 1. ----- -- <u>수립에 관한 사항</u> 2. ----- ----- ----- <u>수립에 관한 사항</u> 3. <u>관광시책 등에 대한 추진실적 평가 및 이행점검에 관한 사항</u> 4.·5.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u><삭 제></u>

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구성원) ① 전략회의는 의
장 이외에 재정경제부장관, 교
육부장관, 외교부장관, 법무부
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
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후에
너지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
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
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으로 구성한다.

② · ③ (생략)

<신설>

제5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생략)

제3조(구성) ① -----

----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

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대통령비서실 관광 관련 수석비

서관-----.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4조(회의의 소집) ① 전략회의

는 연 2회, 반기에 1회씩 개최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필요에 따라 그 개최 시기를 조

정할 수 있다.

② 간사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

지 회의에 출석·발언하는 자에

게 회의 개최의 일시와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5조(회의의 운영)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제6조(회의의 개최) 전략회의는
연 2회, 반기에 1회씩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필
요에 따라 그 개최 시기를 조정
할 수 있다.

제7조(간사) ① 전략회의의 사무
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8조(의안 제출) 전략회의에 안
건을 상정하려는 부처의 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에게 해당 안건을 제
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차관조정회의) ① 의장은
전략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
여 전략회의 전에 차관조정회의
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

② 차관조정회의는 다음 각 호

② 의장이 전략회의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전략회의의 구
성원 중에서 의장이 미리 지정
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제6조(간사) 전략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
며,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장
관이 된다.

제7조(의안 제출) -----

----- 간사-----

-----.
-----.

제8조(실무조정회의) ① -----

----- 실무조정회의
-----.

② 실무조정회의-----

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전략회의의 상정 안건과 관련하여 전략회의가 위임한 사항

<신 설>

2. (생 략)

③ 차관조정회의의 의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되며, 구성원은 해당 안건과 관련되는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이 된다.

<신 설>

-----.

1. 전략회의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검토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2. 전략회의에서 실무조정회의에 위임한 사항

3. (현행 제2호와 같음)

③ 실무조정회의의 의장은 대통령비서실 관광 관련 수석비서관

-----.

제9조(자문회의) ① 국가관광전략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관광전략회의에 자문회의를 둔다.

② 자문회의는 의장 포함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회의의 위원은 관광정책 및 관광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전략회의의 간사가 위촉한다.

④ 자문회의의 의장은 자문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 설>

⑥ 자문회의의 자문 사항을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1. 방한관광

2. 지역관광

3. 관광기반

4. 관광산업

5. 그 밖에 국가관광전략과 관련한 분야

제10조(중앙지방관광협력회의) ①

국가관광전략의 수립·이행에 관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및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전략회의에 중앙지방관광협력회의를 둔다.

② 중앙지방관광협력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전략회의에서 중앙지방관광협력회의에 위임한 사항

2. 전략회의에 상정할 안건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건의 사항

3. 전략회의에 보고할 지역관광시책의 이행상황에 관한 사항

<u>제10조(운영세칙)</u>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u>전략회의의 운영</u>에 필요한 사항은 전략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4. 그 밖에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력이 필요한 사항 ③ <u>중앙지방관광협력회의의</u> 의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되고, 구성원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1명을 말한다)가 된다. ④ <u>중앙지방관광협력회의에</u>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u>중앙지방관광협력회의의</u> 의장이 지명한다. <u>제11조(운영세칙)</u> ----- ----- <u>전략회의, 실무조정회의, 중앙지방관광협력회의 및 자문회의의 운영</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연 락 처	(044) 203 - 2812